

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46호
----------	--------

○ 제안자 : 장성군수
○ 제출일자 : 2026. 4. .



1. 개정이유

-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,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체계에 맞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기준 정비
- 위촉위원의 자격요건과 성별 균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

2. 주요내용

- 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“부군수” 에서 “보건소장” 으로 변경하여 보건 업무 총괄부서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(안 제3조제2항)
- 부위원장을 “위원 중 호선” 에서 “업무 담당부서의 장” 으로 지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조례 문장을 적정하게 현행화(안 제3조제3항)
-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별 균형 기준 명시(안 제3조제4항)
-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조항 수정(안 제3조제5항)

3. 관련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

4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불임)

5. 입법예고 : 2026. 3. 18. ~ 4. 7.(20일간) / 의견없음

6. 사전협의사항

- 부패영향평가 : 2026. 3. 24. 감사팀장 협의결과, 이견없음
- 규제심사 : 2026. 3. 16. 법무통계팀장 협의결과, 이견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2026. 3. 23. 여성다문화팀장 협의결과, 이견없음

7. 조례안 : 불임

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중 “**부군수**” 를 “**보건소장**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**협의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**” 를 “**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**” 로, “**사고가 있을 때에는**” 을 “**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**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촉위원은 공공기관 및 학교 보건 관계자, 보건·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, 지역주민 대표 등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은 건강생활실천 또는 건강증진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, 2명 이내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**건강정책팀장**” 을 “**업무 담당 팀장**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잔여 임기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회장은 <u>부군수로 한다.</u></p> <p>③ 부회장은 <u>협의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④ 위촉위원은 <u>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.</u></p> <p>⑤ <u>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과장, 주민복지과장이 된다.</u></p> <p>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(생 략)</p> <p>② 간사는 <u>건강정책팀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</u>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보건소장으</u>-----.</p> <p>③ ----- <u>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</u>----- <u>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</u> -----.</p> <p>④ 위촉위원은 <u>공공기관 및 학교 보건 관계자, 보건 · 의료 관련 단체 관계자, 지역주민 대표 등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</u>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p> <p>⑤ <u>당연직 위원은 건강생활실천 또는 건강증진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, 2명 이내로 한다.</u></p> <p>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업무 담당 팀장</u>----- 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
(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)

2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 변경 및 위원 구성 기준 정비 등 운영체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3. 작성자 : 건강증진과장

김 영 미 (서명 )